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1.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게시의무 기간 연장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소방청	작 성 자	이름	노시환
	담당부서 (과)	소방분석제도과		직급	소방경
	국장	홍영근		연락처	044-205-7522
	과장	박진수		이메일	hongbo119@ma il.go.kr

2025. 03. 12. 작성

정책책임자 화재예방국장 홍영근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게시의무 기간 연장								
	2.규제조문	제25조								
	3.위임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5.03.24~2025.05.0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배경) 현행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 자체점검기록표를 30일이상만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 6개월 주기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높아진 안전에 대한 기대와 알 권리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개입 필요성) 소방안전에 대한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 공개 제도의 일환으로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기록표를 특정소방대상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공백기간이 없이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구체화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 － 특히, 부천 호텔 등 숙박시설 화재사고를 계기로, 국민의 알권리 실현 및 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해 소방시설 정보제공 필요								
	7.규제내용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도록 하던것을 다음 자체점검(약6개월 후) 시까지 게시하도록 게시기간 연장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td><td>429,152개소</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429,152개소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429,152개소								
9.규제목표	－ 소방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안전 선택권 제공은 물론 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 － 사회적으로 높아진 안전의식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충족하고, 화재 안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에 대한 공개기간을 공백이								

	분석 (정성분석)	없도록 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안전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자체점검 중 발견된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안전의식의 향상과 정보 요구권에 대한 선제적 제도개선으로 볼 때,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개정이유와 취지에 부합하며, 자체점검 기록에 대한 공개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규제내용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현행도 30일 이상 규정하고 있어 제거하지 않을 경우 우선적용 가능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자체점검 결과의 게시) <u>소방</u> <u>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u> <u>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u> 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u>보고한</u> 날부 터 10일 이내에 별표 5의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 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u>30일 이상</u> 게시해 야 한다.	제25조(자체점검 결과의 게시) <u>관계</u> <u>인</u> ----- ----- ----- ----- <u>소방본부장</u> <u>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결과</u> <u>를 보고한</u> ----- ----- ----- ----- <u>게시하고, 다음번</u> <u>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게시일</u> <u>까지</u>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현행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 자체점검기록표를 30일이상만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 6개월 주기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높아진 안전에 대한 기대와 알 권리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개입 필요성) 소방안전에 대한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 공개 제도의 일환으로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기록표를 특정소방대상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공백기간이 없이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구체화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
 - 특히, 부천 호텔 등 숙박시설 화재사고를 계기로, 국민의 알권리 실현 및 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해 소방시설 정보제공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현행유지안) 현행안을 지속할 경우, 특정한 기간에만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높아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함
- (규제대안1) 현행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규제 당사자의 적극적인 소방시설 보수·수리 등 안정성 확보에 제도 효용이 기대되는 측면에서 볼 때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특정소방대상물의	(3.24.~5.2.) / 온라인 /		

관계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일 부개정안 입법예고(예정)		
관계부처, 숙박단체	'24.9.25. / 소방청 회의실 / 자체점검 결과 스프링클 러 설치 여부 관련 정보 공개*	개정에 동의	개정추진
대국민 특정소방대상물 이용자	(3.24.~5.2.) / 온라인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일 부개정안 입법예고(예정)		

3. 규제목표

- 특정소방대상물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안전 선택권”의 권리 보장
- 불량시설과 수리 기간 등의 정보가 언제든지 공개됨에 따라 피규제 당사자의 적극적인 소방시설 보수·수리 등 안정성 확보 효과를 기대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규제목적) 본 규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에 대한 공개기간을 연장함에 특정소방대상물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안전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자체점검 중 발견된 소방시설 불량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것임
- (규제수단) 변화하는 사회적 안전의식의 향상과 정보 요구권에 대한 선제적 제도개선이며, 자체점검 기록에 대한 공개기간을 연장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규제내용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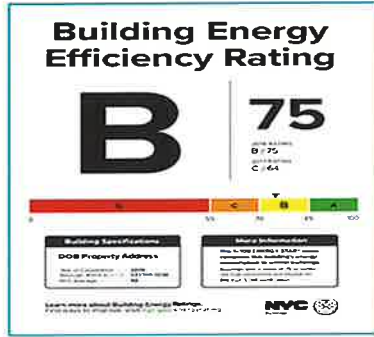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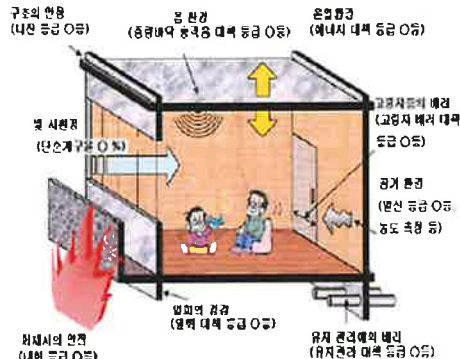
- (해외 유사사례) 미국, 일본의 건축물 등급에 관한 정보 공개를 조사 분석한 바, 2개국 모두 건축물의 등급 규제와 정보공개 규제를 혼용하여 운용 중임
- 미국 뉴욕시의 경우 건물관리부(NYC Department of Buildings)가 지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의무적으로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라벨을 입구에 부착하도록 제도를 도입
- 일본의 경우 2000년도부터 주택성능 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주택의 강도, 안전성, 화재 내구성 등을 10개 분야 32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 또는 수치로 표기한 성능평가서를 교부
 - ※ 2008년부터는 신축 건축물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도 소급 적용하고, 등급, 수치 표기된 평가서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제공
- (미국) 뉴욕시에서 건물 에너지 효율성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법률인 2018년 지역법 33호(Local Law33 of 2018)을 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 25,000ft²(약 2,322m²)의 이상 건물에 에너지 효율 등급을 지정하고 라벨을 제작·배포하여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도록 함은 물론 미국 환경 보호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온라인 플랫폼인 에너지 스타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이용해 해당 정보를 열람하여 에너지 효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해외동향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장관 및 내각 총리가 주택성능을 표시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성능 평가의 방법과 관련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주택의 강도, 화재 안전성, 고령자에 대한 배려 등 10개 분야, 32개의 성능 항목에 대한 등급을 성능평가 기관이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교부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 계약에 당사자에게 관련 정보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등급, 수치화하여 제공한다.

【일본의 주택성능평가】



주택 부분별 성능표시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주택의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개요>



설계주택 성능평가 마크



건설주택 성능평가 마크



기존주택 성능평가 마크

○ 타법사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2에서는 시설물 관리계획, 안전 등급, 중대 결함, 긴급 안전조치 현황, 점검 등의 정보를 국토교통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전기설비의 현황, 검사·점검 연월일, 검사·점검자명, 점검 결과 등의 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3조에서는 승강기의 안전 인증, 점검·검사 이력, 중대사고 또는 중대 고장의 현황 등의 정보를 행정안전부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 행정안전부의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에 시설물, 전기, 승강기 안전 정보 등이 통합되어 제공되고 있음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행 운영하는 제도를 자체점검기록표 게시기간만 연장하는 것으로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의 예산 불필요함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개정안은 사회적으로 높아진 안전의식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충족하고, 화재 안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공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 규제 대안의 비교평가, 국내 유사입법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 국가가 소방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안전 선택권 제공은 물론 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됨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①피규제 일반국민 :

☐ 비용

(정성)영향집단명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활동제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게시
비용항목	게시물 유지관리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는 현행기준에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게시기간을 30일에서 다음 자체점검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은 소요되지 아니함.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활동제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게시
편익항목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안전 홍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언제든지 해당특정소방대상물을 이용하는 국민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그 효과가 있음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국민
활동제목	안전한 특정소방대상물 확인가능
편익항목	안전에 대한 경각심 부여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특정소방대상물 이용하는 국민이 해당대상의 안전이 확보된 것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음.